

# 2019년 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관련 「점수제」 운영계획 및 업무처리요령

2019. 3.

국 제 협 력 관  
외국인력담당관

## 차 례

I. '19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	1
II. '19년 4월 점수제 운영 계획	2
1. '19.4월 신규인력 배정계획	3
2. 단계별 업무처리 요령	5
<붙임> 1. 제조업 점수 항목 및 배점 기준	11
2. 소수업종 점수 항목 및 배점 기준	15
3. 우수기숙사 요건 및 확인 방법	21
4. 제출서류 발급기관 및 연락처	22
5. 사업주 안내문	23
6. 외국인 고용사업장 주거시설조사표	28

## I '19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 계획

- '18.12.19.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'19년 일반 외국인력(E-9) 도입 규모를 5만6천명(신규 43,000 + 재입국 13,000)으로 결정

구분	총계		제조업	농축산업	어업	건설업	서비스업
총계(명)	56,000	52,000+a(4,000)	40,700+a <sub>1</sub>	6,400+a <sub>2</sub>	2,500+a <sub>3</sub>	2,300+a <sub>4</sub>	100+a <sub>5</sub>
신규	43,000	39,000+a(4,000)	28,880+a <sub>1</sub>	5,450+a <sub>2</sub>	2,300+a <sub>3</sub>	2,280+a <sub>4</sub>	90+a <sub>5</sub>
재입국	13,000		11,820	950	200	20	10

※ 쿼터 소진 현황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업종 간, 신규·재입국자 간 일부 조정 가능

- 전체 도입규모 중 4천명 분은 업종별 외국인력 수요에 따라 업종별 탄력 배분
- 제조업은 연중 4회(1·4·7·10월), 어업, 건설업은 연중 3회(1·4·7월), 농축산업은 연중 3회(1·4·10월) 분산배정, 서비스업은 연중 2회(1·4월) 분산 배정

<신규인력 배정시기 및 규모>

시기	합계	제조업	농축산업	어업	건설업	서비스업
합계(명)	39,000+a(4,000)	28,880+a <sub>1</sub>	5,450+a <sub>2</sub>	2,300+a <sub>3</sub>	2,280+a <sub>4</sub>	90+a <sub>5</sub>
1월	14,320+a(2,400)	8,700+a <sub>1</sub>	3,270+a <sub>2</sub>	1,160+a <sub>3</sub>	1,140+a <sub>4</sub>	50+a <sub>5</sub>
4월	11,760+a(1,600)	8,700+a <sub>1</sub>	1,630+a <sub>2</sub>	690+a <sub>3</sub>	700+a <sub>4</sub>	40+a <sub>5</sub>
7월	6,630	5,740		450	440	
10월	6,290	5,740	550			

※ 쿼터소진 현황 등에 따라 고용부장관은 시기별 배정 일부 조정 가능

- 모든 업종을 점수제 방식에 따라 배정

\* 재입국자 쿼터의 경우 법정조건 등을 갖춘 사용자가 수시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하므로 연중 수시 고용허가서 발급

## II

## '19년 4월 점수제 운영 계획

< 연중 일정 >

구분	접수기간	점수제 대상 여부 확인	점수제 결과 발표	고용허가서 발급
1월 (전 업종)	1.3(목)~1.17(목)	1.18(금)~1.31(목)	2.1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소수업종: 2.7(목)~2.12(화)</li> <li>■ 제조업: 2.13(수)~2.18(월)</li> </ul>
4월 (전 업종)	4.1(월)~4.15(월)	4.16(화)~4.25(목)	4.26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소수업종: 4.29(월)~5.2(목)</li> <li>■ 제조업: 5.3(금)~5.9(목)</li> </ul>
7월 (제조업, 어업, 건설업)	7.1(월)~7.15(월)	7.16(화)~7.25(목)	7.26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어업, 건설업: 7.29(월)~7.31(수)</li> <li>■ 제조업: 8.1(목)~8.6(화)</li> </ul>
10월 (제조업, 농축산업)	10.1(화)~10.15(화)	10.16(수)~10.24(목)	10.25(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■ 농축산업: 10.28(월)~10.30(수)</li> <li>■ 제조업: 10.31(목)~11.5(화)</li> </ul>

# 1. '19. 4월 신규인력 배정 계획

<참고>

□ 해당 업종 및 인원: 전 업종 11,760+a(1,600)명\*

\* 제조업 8,700+a명 / 농축산업 1,630+a명 / 어업 690+a명 / 건설업 700+a명 / 서비스업 40+a명

□ 배정 일정

- 신규 외국인력 배정일정 시달: '19.3.18(월)~'19.3.22(금)
  - \* 지방관서는 <붙임 6>안내문을 참조, '19.3.29.까지 관내 사업장에 배정 일정 등을 상세하게 안내하여 기간 내 신청 완료하도록 지도
-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: '19.4.1(월)~4.15(월)
  - \*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장은 4.15(월) 24:00까지만 EPS 전산입력 가능
- 접수제 사업장 풀(Pool) 구성: 4.1(목)~4.16(화)
-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 및 확정 : 4.17.(수)~4.25(목)
  -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확인: 4.17(수)~4.22(월)
  - 지방관서 담당자 확인 및 확정: 4.23(화)~4.25(목)
-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발표: 4.26(금) 14:00, 16:00
- 고용허가서 발급
  - 농축산업·어업·건설업·서비스업: 4.29(월)~5.2(목)
  - 제조업: 5.3(금)~5.9(목)
- 지연방문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
  - 추가 발급: 5.13(월)~5.15(수)
    - \* 지연방문 추가발급 안내: 5.10(금)
- 미발급 잔여분 추가 발급(잔여분 발생시)
  - (1차)추가발급: 5.17(금)~5.21(화)
    - \* 잔여분 발생시 5.16(목) 추가발급 안내
  - (2차)추가발급: 5.23(목)~5.24(금)
    - \* 1차 추가발급후 잔여분 발생시 5.22(수) 추가발급 안내

## '19.4월 신규인력 배정 세부 일정

일	월	화	수	목	금	토
	1 접수	2	3	4	5	6
7	8	9	10	11	12	13
14	15 접수마감	16	17	18	19	20
21	22	23	24	25	26 발표	27
28	29	30	5/1 근로자의 날	2	3	4
	소수업종			소수업종	제조업	
5	6 대체휴일	7	8	9	10	11
	제조업				지연안내	
12	13	14	15	16	17	18
	지연발급			1차 추가 안내	1차 추가발급	
19	20	21	22	23	24	25
	1차 추가발급		2차 추가안내	2차 추가발급		

## 2. 단계별 업무처리 요령

### 가 고용허가서 신청서 접수 (사업장→지방관서)

- 접수 기간: '19.4.1(월) ~ 4.15(월)
  - \* 고용허가서 신청 사업장은 4.15(월) 24:00까지만 EPS 전산입력 가능
- 접수 방법: 사용자 또는 대행기관에서 지방관서에 직접 방문하거나, 인터넷\*(www.eps.go.kr) 등을 통해 접수

#### ☞ 유의사항

- 접수기간 전에 이미 “사업장 변경자” 또는 “관계없음”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서도 접수기간 중 “신규입국자”로 변경할 수 있으며, “신규입국자”에 체크되어 있는 경우에만 점수제 적용이 가능
  - 다만,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(외고법 제8조제2항)이고
  - 대기 사업장의 경우 실제 발급일이 최초 발급일로부터 2개월 이상 지연될 수 있으므로 3개월 도과로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**가급적 고용허가를 새로 신청할 것을 안내**
- 접수기간 동안 신규 외국인력에 대한 고용허가 신청서 등록 시 “관계없음” 항목은 비활성화 될 예정

#### ○ 접수 시 주거시설표 확인 및 증빙서류 입력

- 고용허가 신청 시 사업주로부터 '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(붙임6)'를 제출받아 주거형태\* 등을 EPS에 입력(전 업종)
  - \* 주거형태: '아파트, 단독주택, 연립·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'과 '임시주거시설' 구분
- 제출받은 조사표 상 전기안전진단 실시 입증자료\*를 제출시 입력(EPS 업로드, 농축산업 가점 부여시)
  - \* (입증 자료) 전기안전진단: 전기안전진단 확인서, 점검필증 등
  - \*\* 전기사업법상 전기안전관리가 가능한 자에 의한 안전점검도 인정

- 지방관서 업무형편 상 현실적으로 모든 사업장에 출장 확인은 곤란하므로 허위 기재가 의심되거나 명백한 경우에만 현지출장 확인
  - 주거시설표를 제출받을 때 “향후 사업장 지도·점검시 숙소형태가 조사표상 기재내용과 다를 경우 감점이 부여되어 신규인력 배정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고, 사업장 변경사유에 해당함”을 설명

### 나 점수제 사업장 풀(Pool) 구성 (지방관서→고용정보원)

- 기 간: '19.4.1(월) ~ 4.16(화)
  - 지방관서는 신청서 접수 즉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검토 후 요건 충족 시 “허가”로 전산시스템에 “등록”(등록된 사업장은 점수제 적용 풀에 포함)
    - 요건 미충족 사업장에 대해서는 고용허가 불인정 통보
      - \* **발급 요건**(시행령 제13조의4): △해당 업종·사업장, △내국인 구인노력, △내국인 고용조정 여부, △임금체불 여부, △고용보험·산재보험 가입 △출국만기보험·보증보험 가입 등 확인
      - \* **결격사유**(법 제20조): 외국인 고용제한 여부 확인
- ⇒ 접수된 신청서는 4.16(화) 24시까지 반드시 등록 완료

#### ☞ 유의사항

- ① 4.1.(월)~4.16(화) 24시까지는 고용허가 신청 등록·수정 가능
  - 4.16(화) 24시 이후 처리된 사항은 점수계산에 반영되지 않으므로, 고용변동 신고, 피보험자 신고, 내국인 구인등록 등 각종 등록을 반드시 기한 내 완료
- ② 방문 접수자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즉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를 검토하고, 인터넷 접수 건은 수시 검토하여 요건 미 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해당 내용을 사업장에 안내
  - 사업장 현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한 내 반드시 처리 완료
- ③ “사업장 변경자” 또는 “관계없음”으로 고용허가를 신청한 사업장에서 접수기간 동안 “신규입국자”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내국인 구인노력을 제외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를 다시 검토
- ④ 고용허가서 발급 여부를 통보할 휴대폰 번호를 반드시 기입하도록 확인·지도

- 지방관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 시 해당 사업장 또는 대행기관에 아래 내용을 안내

**< 사업장 또는 대행기관 안내사항 >**

- ① 접수제 결과 발표는 4.26(금) 14:00, 16:00에 휴대폰 문자(SMS)로 2회 안내되며, 4.26(금) 14:00부터 EPS 홈페이지(www.eps.go.kr)에서도 확인할 수 있음
  - (휴대폰 문자) 사업장에 발송.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의 경우 지방관서 방문일자 및 시간도 함께 안내되며, 대기사업장에는 대기번호 안내
  - (EPS 홈페이지 검색) 해당 사업장에서 검색 가능하며(국문홈페이지), 대행기관에서는 대행 신청한 업체에 대해서만 검색 가능(인트라넷), 사업장 정보가 EPS에 등록되어 있어야 하고 사전 회원가입(공인인증서 필요) 요망
- ②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인 경우, 반드시 미리 안내된 날짜 및 시간에 지방관서에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받아야 하며,
  - 늦게 방문할 경우, 시간에 맞춘 사업장을 우선 발급하게 되므로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고, 날짜가 지나도 연락이 안 되는 경우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도 있음

**다 고용허가서 대상 사업장 확인 및 확정 (고용정보원 → 지방관서)**

- 고용허가 대상 사업장 확정: 4.17(수)~4.25(목)
  - 풀(Pool)에 속한 사업장에 대하여 접수부여 및 업종별로 접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작업 진행
  - 업종별 쿼터 총량에 도달하면 그 이후부터 대기 순번 부여
  - \* 동점인 경우에는 우선배정 사업장 선정기준 <붙임1>에 따름
- 지방관서 담당자 확인: 4.23(화)~4.25(목)
  - 발급요건 미충족으로 접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장에 대해 제외 여부를 재검토하여 대상 사업장을 최종 확정
  - 아울러, 지방관서 담당자는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해 “지방관서의 일일 고용허가서 발급가능 건수”를 결정하여 한고원에 통보

**라 대상 사업장 발표 (고용정보원 → 사업장)**

- 대상 사업장 발표: 4.26(금) 14:00, 16:00(2회)
  - 발급대상 사업장, 대기 사업장, 발급 미대상 사업장에 각각 SMS 발송

**< 결과 발표 문자(SMS) 예시 >**

- ▶ (발급대상 사업장) “귀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사업장입니다. 4.29. 오전 10~11시 사이에 00로 방문하여 주십시오. 만약 11시 이후에 오시면 순서가 뒤로 밀릴 수 있고, 지정된 날짜에 오지 않고 연락되지 않으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(시간 엄수).”
- ▶ (대기 사업장) “귀 사업장은 미발급 건 발생 시 고용허가서가 발급될 수 있는 대기사업장입니다. 대기번호는 00번이며, 추후 고용허가서 발급이 확정되면 별도 연락드리겠습니다.”
- ▶ (미대상 사업장) “귀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요건 검토 결과 미비한 점 (출국만기보험 미가입 등이 확인되어 발급대상 사업장에 포함되지 못하였습니다.”

- SMS 발송 시 발급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별 지방관서 방문일자,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통보
- EPS 홈페이지를 통한 결과 조회: 4.26(금) 14:00이후
  - 신청 사업장은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\*, 대행기관은 인트라넷을 통해 대행신청을 한 업체에 대해 조회 가능
  - \* 조회내용: ① 신청 업종의 최저 발급 가능 점수 ② 신청 사업장의 총점 및 항목별 점수 내역 ③ 접수제 시행 결과 ④ 결과에 따른 안내문

**마 고용허가서 발급 (지방관서→사업장)**

- 농축산업·어업·건설업·서비스업: 4.29(월)~5.2(화), 제조업: 5.3(금)~5.9(목)
  - 지정된 날짜·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사업장에 고용허가서 발급
  - \* EPS상 고용허가서 발급이 예정되어 있는 사업장은 “Y”로 표기

- 같은 시간대(예: 9~10시 사이)로 지정된 사업장 간에는 점수 순서를 적용하지 않고 방문하는 순서대로(번호표 발급) 고용허가서 발급
- 지정된 시간대보다 일찍 방문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지정된 시간이 지나야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함을 안내
  - \* 지정된 시간 이전에는 전산(EPS)상 해당 사업장에 대한 고용허가서 발급 불가
- 지정된 시간대보다 늦게 방문한 경우, 시간에 맞춘 사업장을 먼저 발급하고, 늦게 방문한 사업장은 여유시간에 발급

'19년도 점수제 운영계획'을 숙지하여 신청 사업주에게 철저히 안내

## 바 잔여분 고용허가서 추가 발급 (지방관서→사업장)

### □ 지연 방문한 사업주 고용허가서 발급: 5.13(월) ~ 5.15(수)

- (5.10<금>, 사업장 안내)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중 5.9(목)까지 발급 받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반드시 5.15(수)까지 발급받도록 안내
  - \* 한고원은 5.10(금) 2회(11:00, 15:00) SMS 문자발송
  - \* 지방관서는 연락이 안 되는 사업장에 대해 3회까지 유선 연락
- (~5.15<수>, 고용허가서 발급) 지방관서를 방문하는 사업장에 고용허가서 발급
  - ⇒ 지정된 날짜보다 늦게 오는 경우, 5.15(수)까지 지방관서를 방문하면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

#### ☞ 유의사항

- ① 각 지방관서에서는 방문 사업장 창구 외에 온라인 발급 창구도 함께 운영 (온라인 발급 창구에서도 지정된 일자·시간이 지나야만 발급 가능)
- ② 각 지방관서에서는 고용허가서 발급 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다시 검토하여 해당요건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발급
- ③ 5.15(수)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된 사업장은 고용허가서 발급 예정이 취소되고, 대기사업장에 배정할 예정(필히 해당사업장에 안내)

### □ 추가 고용허가서 발급: 잔여분 발생시

- (5.16<목>, 사업장 안내) 지연사업장 발급 후 잔여분 발생 시 대기 사업장에 5.21(화)까지 발급받도록 안내
  - \* 한고원은 5.16(목) 2회(11:00, 15:00) SMS 문자발송
- (5.17(금)~5.21<화>, 고용허가서 발급) 지방관서를 방문하는 사업장에 고용허가서 발급
  - ⇒ 지정된 날짜보다 늦게 오는 경우, 5.21(화)까지 지방관서를 방문하면 고용허가서 발급 가능
- 1차 추가 고용허가서 발급 후 잔여분 발생시 1차 추가 발급 절차와 같이 2차 추가발급
  - \* 5.22(수) 추가 발급 안내 후 5.23(목)~5.24(금)까지 발급

### □ 미발급 대기사업장 마감안내

- 추가 발급 후에도 고용허가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대기 사업장에 대해 한고원에서 일괄적으로 고용허가서 발급 마감사실을 SMS로 통지
  - \* 한고원: SMS 문자발송 2회(11:00, 15:00)

- ▶ 마지막 추가발급 사업장 이후 발급 대상이 되지 않은 대기사업장 전체
  - (예시) “고용허가서 발급마감 안내” '19.4월 신규외국인력 배정이 00.00자로 마감되어, 귀 사업장에는 신규인력이 배정되지 않음을 최종 알려드립니다.”

<붙임1> 제조업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

□ 기본 항목 (100점)

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(30점, 편차 0.4점)

- ▲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(E-9)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외국인(E-9) 고용 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

\* 산식= 외국인 고용인원 /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

비율	0~0.05	0.05초과 ~0.1	0.1초과 ~0.15	0.15초과 ~0.2	...	0.9초과 ~0.95	0.95초과 ~1
점수	30	29.6	29.2	28.8	...	22.8	22.4

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(30점, 편차 0.4점)

- ▲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(E-9)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(E-9,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 익월부터 6개월 까지 기간 동안)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

\* 산식 = 재고용만료자(5~10월) /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인원

비율	0~0.05	0.05초과 ~0.1	0.1초과 ~0.15	0.15초과 ~0.2	...	0.9초과 ~0.95	0.95초과 ~1
점수	22.4	22.8	23.2	23.6	...	29.6	30

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(20점, 편차 0.2점)

- ▲ 신규고용 인원을 적게 신청하는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

신규고용 신청	1명	2명	3명	4명	5명	6명 이상
점수	20	19.8	19.6	19.4	19.2	19

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(20점, 편차 2점)

- ▲ 당해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중에 고용센터 알선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(워크넷 확인)

내국인 구인	0명	1명	2명	3명 이상
점수	14	16	18	20

□ 가점 항목

① 귀국비용보험,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

- ▲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근로자 가입 보험의 미가입자와 연체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업장: 1점 가점

② 우수 기숙사 설치·운영 사업장

- ▲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관할 지방관서가 사업장 지도·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: 인정일부터 최대 2년간 2점 가점

③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

- ▲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: 1점 가점

④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 18001) 인증 사업장

- ▲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(kosha 18001) 인증 사업장으로 확인한 사업장: 각 1점 가점

⑤ 노동시간 단축사업장

- ▲ 법정 시행일\*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(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) 사업장에 대해 2점 부여

\* 시행일: ('18.7.1) 300인 이상, ('20.1.1) 50인~300인 미만, ('21.7.1) 5인~50인 미만

- 신규 고용허가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로시간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가점 부여

□ 감점 항목

① 사업장 지도·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(1~3점)

- ▲ 관할 지방관서가 고용허가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외국인(E-9, H2) 고용 사업장 지도·점검 결과 법위반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은 사업장

- 임금(퇴직금 포함) 체불, 최저임금 미지급

구분	시정 지시	사법 처리
1건당 감점	0.2	0.5
감점 상한	2	3

- 임금(퇴직금 포함) 체불, 최저임금 미지급 외 지적사항

처리결과	시정지시	과태료 부과	고 발	고용허가 취소·제한	관계기관 통보
1건당 감점	0.1	0.2	0.3	0.2	0.2
감점 상한	1	2	3	2	2

②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(상한 5점)

- ▲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 그 횟수에 따라 감점

보험 구분	출국만기보험료(미납 횟수)		
	2회	3회	4회 이상
보험료 연체자 1인당 감점	0.5	1	2
감점 상한	5		

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(3~10점)

- ▲ '17.1.1.부터(성폭행의 경우 '14.1.1.)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까지 사업주 귀책으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감점
- 부여 점수: 성폭행 10점 / 폭행, 폭언, 성희롱 등 5점 /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변경 3점
- \* 기준 시점: 사업장변경 신청접수일
- \* 사업주 귀책사유: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7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"제4조"(근로조건 위반), "제5조"(부당한 처우)에 속하는 경우

④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(각 1점)

- ▲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아 공표된 사업장 또는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받은 사업장으로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된 경우: 각 -1점 감점

⑤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(1~2점)

- ▲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근로자 사망재해 발생한 것으로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된 사업장
  - 1명 사망 시: 1점 감점
  - 2명이상 사망 시: 2점 감점

□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

- 선정 기준: ①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② 외국인 고용허용 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③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④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⑤ 전산추첨

<붙임2> 소수업종(제조업 제외) 점수항목 및 배점기준

□ 기본 항목 (100점)

① 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 비율(30점, 편차 0.4점)

- ▲ 고용허가 신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(E-9)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외국인(E-9) 고용 인원이 적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

\* 산식= 외국인 고용인원 /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허용인원

비율	0~0.05	0.05초과 ~0.1	0.1초과 ~0.15	0.15초과 ~0.2	...	0.9초과 ~0.95	0.95초과 ~1
점수	30	29.6	29.2	28.8	...	22.8	22.4

②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 비율(30점, 편차 0.4점)

- ▲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일 익일 기준 외국인(E-9)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(E-9, 고용허가 신청 접수마감 익월부터 6개월 까지 기간 동안)가 많을수록 높은 점수 부여

\* 산식 = 재고용만료자(5~10월) / 해당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인원

비율	0~0.05	0.05초과 ~0.1	0.1초과 ~0.15	0.15초과 ~0.2	...	0.9초과 ~0.95	0.95초과 ~1
점수	22.4	22.8	23.2	23.6	...	29.6	30

③ 신규 고용 신청 인원(20점, 편차 1점)

- ▲ 신규고용 인원을 적게 신청하는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

신규고용 신청	1명	2명	3명	4명	5명	6명 이상
점수	20	19	18	17	16	15

④ 내국인 구인노력 결과 채용 인원(20점, 편차 0.5점)

- ▲ 당해 고용허가 신청을 위한 내국인 구인노력기간 중에 고용센터 알선자를 많이 고용한 사업장에 높은 점수 부여(워크넷 9확인)

내국인 구인	0명	1명	2명	3명	4명 이상
점수	18	18.5	19	19.5	20

□ 가점 항목

① 귀국비용보험,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

- ▲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근로자 가입 보험의 미가입자와 연체 보험료가 전혀 없는 사업장: 1점 가점

② SOC 사업장(건설업)

- ▲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국토교통부가 SOC건설현장으로 인정한 사업장: 2점 가점

\*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SOC사업장으로 주장하는 사업장 명단을 국토부에 보내 확인

③ 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(농축산업, 어업)

- ▲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가 인증한 친환경농축수산물 생산 사업장: 0.2점 가점

\* 고용허가신청서 접수 시 신청인이 친환경인증 사업장으로 주장하는 명단을 농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에 보내 확인

④ 우수 기숙사 설치·운영 사업장

- ▲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지방관서가 사업장 지도·점검 결과 우수 기숙사 설치 사업장으로 인정한 사업장: 인정일부터 최대 2년간 5 가점

⑤ 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

- ▲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고용허가 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주교육을 이수한 사업장: 2점 가점

⑥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 18001) 인증 사업장

- ▲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위험성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 시스템(kosha 18001) 인증 사업장으로 확인한 사업장: 각 1점 가점

⑦ 농축산·어업 분야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적용 사업장

- '15.10월, '17.5월 시행된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·신고한 사업주에 대해서 가점 부여

- 가이드라인 상의 아래 기준을 모두 적용하여 작성·신고된 표준 근로계약서: 1건당 0.1점 (최대 0.5점)

- ① 근로시간: 평시 기준(월 234시간) 적용 여부
- ② 휴게: 평시기준 1일 60분(1시간) 이상 부여 여부
- ③ 휴일: 평시기준 주1회 정기부여 여부
- ④ 주거유형별 숙식비용 공제상한 준수 여부: 공제상한 준수

< 숙식제공에 따른 근로자의 비용 부담 기준의 공제상한 >

구 분	아파트, 단독주택, 연립·다세대 주택 또는 이에 준하는 시설	그 밖의 임시 주거시설
숙식 모두 제공	상한액: 월 정액임금의 20%	상한액: 월 정액임금의 13%
숙소 만 제공	상한액: 월 정액임금의 15%	상한액: 월 정액임금의 8%

⑧ 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(농축산업)

- 숙소 시설기준 이상의 주거 시설로서 아래 항목을 갖출 경우에 항목별로 1점 가점(최대 3점)

▲ 수세식 화장실을 설치한 경우 ▲ 숙소 건물 내 샤워실 또는 입식 세면대를 설치한 경우 ▲ 전기안전진단을 받은 경우

- 특히, 아파트, 단독주택, 연립·다세대주택 및 이에 준하는 시설(고시원, 오피스텔 등)을 제공하는 경우 별도로 1점 추가

\* 주거환경 우수사업장으로 가점을 받은 사실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에는 항목별 가점에 0.5점을 더한 1.5점 감점 부과

※ 우수기숙사로 인정받아 가점(5점)을 받은 경우,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

⑨ 노동시간 단축사업장

▲ 법정 시행일\* 이전 노동시간 단축을 시행한(시행일 이전의 고용허가 신청) 사업장에 대해 2점 부여

\* 시행일: ('18.7.1) 300인 이상, ('20.1.1) 50인~300인 미만, ('21.7.1) 5인~50인 미만

- 신규 고용허가서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근로시간단축 사업장으로 확인된 사업장에 가점 부여

□ 감점 항목

① 사업장 지도·점검 결과 지적사항에 따른 감점(1~3점)

▲ 관할 지방관서가 고용허가신청 전년도에 실시한 외국인(E-9, H-2) 고용 사업장 지도·점검 결과 범위반 사실이 있어 처분을 받은 사업장

- 임금(퇴직금 포함) 체불, 최저임금 미지급

구분	시정 지시	사법 처리
1건당 감점	0.2	0.5
감점 상한	2	3

- 임금(퇴직금 포함) 체불, 최저임금 미지급 외 지적사항

처리결과	시정지시	과태료 부과	고 발	고용허가 취소·제한	관계기관 통보
1건당 감점	0.1	0.2	0.3	0.2	0.2
감점 상한	1	2	3	2	2

② 출국만기보험료 체납 사업장(상한 5점)

▲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 기준 출국만기보험료 연체 시 그 횟수에 따라 감점

보험 구분	출국만기보험료(미납 횟수)		
보험료 연체자 1인당 감점	2회	3회	4회 이상
	0.5	1	2
감점 상한	5		

③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

▲ '17.1.1.부터(성폭행의 경우 '14.1.1.) 고용허가신청 접수 마감일 익일까지 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점

- 성폭행 10점 / 폭행, 폭언, 성희롱 등 5점 / 임금체불 및 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\*로 인한 변경 3점

\* 기준 시점: 사업장변경 신청접수일

\* 사업주 귀책사유: 고용노동부고시 제2019-7호 외국인근로자의 책임이 아닌 사업장 변경 사유 “제4조”(근로조건 위반), “제5조”(부당한 처우)에 속하는 경우

④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(각 1점)

- ▲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은폐로 인해 형사 처벌을 받아 공표된 사업장 또는 보고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 받은 사업장으로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된 경우: 각 -1점 감점

⑤ 사망재해 발생 사업장

- ▲ 고용허가신청 월 초일 기준 최근 2년간 근로자 사망재해 발생한 것으로 본부 산재예방정책과에서 확인된 사업장
  - 1명 사망 시: 1점 감점
  - 2명이상 사망 시: 2점 감점

⑥ 농축산·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

- ▲ 농축산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여 가점을 받았던 사업장에 대해 준수여부를 점검하여 준수하지 않은 경우
  - 가이드라인 미준수 표준근로계약서 1건당 0.2점 감점(최대 1점)

⑦ 주거환경 가점을 허위로 받은 사업장(농축산업)

- ▲ 농축산업 분야 고용허가 신청 시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·점검 시 확인하여 허위로 가점을 받은 경우
  - 허위 가점부여: 항목당 1.5점 감점(확인시점 후 1년간)

⑧ 숙소 시설기준을 미달한 사업장(농축산업)

- 숙소 시설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항목별 1점 감점(최대 5점 감점)

항목	세부 내용
침 실	침실은 성별에 따라 구분하여 배정, 개인당 2.5㎡ 이상 면적 제공
난방시설	보일러(기름, 가스, 전기)를 이용한 바닥난방 시설 설치
화장실·샤워실	화장실 및 샤워실 설치
잠금장치	침실, 화장실·샤워실 별 잠금장치
소화시설	방 별 화재감지기(단독경보형) 설치, 소화기 비치

⑨ 숙소 시설기준 허위 제출 사업장(농축산업)

- ▲ 외국인노동자 숙소가 '숙소 시설기준'을 충족하는 것으로 주거 시설조사표 제출하였으나 추후 허위로 확인된 사업장에 항목당 1.5점 총 7.5점까지 부과
  - \* 사업장 지도·점검 및 외국인노동자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
- 사업장 지도·점검 등을 통해 주거시설조사표가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된 경우 확인시점으로부터 1년간 감점 부여

⑩ 숙소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 비용을 부담시킨 사업장(농축산업)

- ▲ 적발일 기준 숙소비용을 부담시킨 기간이 6개월 미만 -1점, 1년 미만 -2점, 1년 이상 -3점
  - '18.4.1 이후 부담시킨 사업장으로 적발일 기준 1년간 감점 부여
  - \* 사업장 지도·점검 및 외국인노동자 신고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확인

⑪ AI발생 사업장(농축산업): 0.5~2점

- ▲ 최근 2년간 AI발생 사업장에 대해 아래와 같이 감점을 부여하여 자발적 AI 발생 예방노력 유도

횟수	1회	2회	3회	4회
감점	0.5점	1.0점	1.5점	2.0점

- '17.1.1. 이후 AI 발생 및 확정된 사업장에 대해 감점 부여

□ 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

- ① 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② 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③ 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④ 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⑤ 전산추첨

<붙임3> 우수기숙사 요건 및 확인 방법

□ 우수 기숙사 인정 기준: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거시설일 것

- ① 숙소유형이 단독주택, 연립·다세대 주택, 아파트 등의 주거시설일 것  
(컨테이너를 개조한 시설이나, 비닐하우스 내 주거시설 등 임시주거 시설은 제외)
- ② 사업주 소유이거나 잔여 임대기간이 20개월 이상일 것  
(임대기간이 20개월 미만이라도 지금까지의 임대기간 등으로 보아 향후 2년 이상의 재계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인정 가능)
- ③ 소화전, 소화기 등 소방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
- ④ 1실당 평균 거주인원이 4명 이하일 것
- ⑤ 같은 침실을 다른 국적 근로자나, 다른 근무조와 함께 사용하고 있지 않을 것
- ⑥ 침실과 거실 등이 남녀간 구분되어 있을 것
- ⑦ 현대식 부엌, 화장실, 목욕시설, 수도시설 및 난방시설을 갖추고 있고, 화장실과 목욕시설은 남녀 별도의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
- ⑧ 주거시설 설치 및 유지비용을 사업주가 부담하고 있을 것
- ⑨ 「근로기준법 시행령」 제54조부터 제58조의 규정에 따른 주거 기준을 준수하고 있을 것  
(소음 진동이 있는 장소가 아닐 것, 침실 넓이가 1인당 2.5㎡ 이상일 것 등)
- ⑩ 기타 전반적인 숙소 환경이 양호할 것

□ 우수 기숙사 여부 확인 방법

- 지방관서의 부족한 인력상황을 고려하여, 매년 상·하반기에 실시 중인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지도·점검 시 기숙사 점검을 병행 실시
  - 지도·점검결과 외국인고용법 등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감점을 부여하고, 우수기숙사 설치·운영 사업장에 대해서는 가점 부여
- 우수기숙사 여부가 기재된 실태 점검표에 점검자와 사업장 대표가 서명하고,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사실 및 인정 기간(임대차계약서 등 감안하여 최대 2년)을 점검자가 **EPS시스템에 입력**

<붙임4> 제출 서류 발급기관 및 연락처

관련 문서	발급 기관	연락처
뿌리산업증명서 (제조업)	산업통상자원부 뿌리산업진흥센터	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 (☎ 02-2183-1646, <a href="http://www.kpic.re.kr">www.kpic.re.kr</a> )
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(농축산업)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	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☎1588-8112, <a href="http://www.naqs.go.kr">www.naqs.go.kr</a> ), 농업경영체콜센터 (☎1644-8778)
축산업(가축사육업)허가증, 가축사육업 등록증	관할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, 자치구	농림축산식품부( <a href="http://www.mafra.go.kr">www.mafra.go.kr</a> ) 축산정책과(정부통합콜센터 110), 관할 특별자치시, 특별자치도, 시·군, 자치구 축산담당부서

## '19.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계획 안내

- '19.4월 신규 외국인력을 배정받고자 하는 사업주께서는 **4.1(월)~4.15(월)** 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**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제출**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- 신규 외국인력은 「**점수제**」 방식으로 배정되므로 고용허가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점수제 배점 기준에 따라 높은 점수를 부여받은 사업장부터 외국인력이 배정되며, 낮은 점수를 받은 사업장은 대기번호를 부여받게 됩니다.
- **결과발표는 4.26(금) 14:00, 16:00 2회 휴대폰 문자메시지**로 안내해 드리고, 고용허가제 홈페이지(www.eps.go.kr)에서 확인 가능합니다.
  - **고용허가서를 발급받게 되는 사업장에** 대해서는 지방관서 **방문 일자 및 시간도 지정**해 드리니, 지정된 일시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.
  - \* 고용허가서 발급일자: 농축산업·어업·건설업·서비스업 4.29(월)~5.2(목), 제조업 5.3(금)~5.9(목)
- '19년 신규 외국인력 배정은 '18년 「외국인력정책위원회」의 결정에 따라 **제조업은 연중 4회(1·4·7·10월)**, 어업, 건설업은 **연중 3회(1·4·7월)**, 농축산업은 **연중 3회(1·4·10월)**, 서비스업은 **연중 2회(1·4월)**에 진행됩니다.
- 자세한 내용 붙임의 「'19.4월 신규 외국인력 배정 세부 일정」 참조

고 용 노 동 부

□ 해당업종 : 제조업, 농축산업, 어업, 건설업, 서비스업

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 접수: 4.1(월)~4.15(월)

-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를 접수하기 전에 반드시 **내국인 구인 노력**을 거쳐야 합니다.
-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고용센터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, 인터넷(www.eps.go.kr)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.
  - \* 방문 또는 팩스로 고용허가신청서를 제출하는 경우 접수 마감일 18:00까지, 인터넷으로 제출하는 경우는 접수 마감일 24:00까지 가능

### ☞ 유의사항

- ① 내국인구인노력을 위한 **구인신청은 지방관서(워크넷)를 통해 하셔야** 내국인 채용 시 **가점혜택**을 받을 수 있습니다.
- ② 고용허가서 발급 신청서는 신청기간 중 언제든지 제출하면 되므로 **미리 줄서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.**
- ③ 사업장 변경자를 고용하기 위하여 고용허가신청을 하였다가 신규 인력 고용으로 전환하고자 할 경우에는 **반드시 접수기간 중 관할 지방관서에 전환신청을 하여야** 합니다.
  - 다만,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이 3개월이므로 대기기간이 길어지는 경우에 대비하여 가급적 신청기간 중에 고용허가신청을 새로 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.
- ④ 뿌리산업으로 신규고용허용인원 1명 추가로 신청할 경우 뿌리산업진흥센터에서 발급한 뿌리산업증명서를 고용센터에 제출하셔야 합니다.

□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 확정: 4.17(수)~4.25(목)

- 지방관서에서는 접수된 사업장에 대해 고용허가서 발급요건 및 결격사유 등을 검토하게 됩니다.
  - \* 발급요건 미충족 또는 결격사유 해당 시 고용허가 불허

- 발급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제 점수항목 기준에 따라 전산 시스템을 통해 점수를 산정하고,
  - 점수가 높은 사업장부터 고용허가서를 발급하게 되며, 점수가 낮은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부여합니다.
- 고용허가서 발급대상 사업장에 대해서는 점수 순에 따라 지방관서 방문 일자 및 시간을 지정해 드립니다.

**<제조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>**

- **기본 항목 (4개)**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(22.4~30점)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('19.2월~7월 까지 6개월간)가 많을수록(22.4~30점)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(19~20점) ④ 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(내국인)를 많이 고용할수록(14~20점) 높은 점수 부여
- **가점 항목 (5개)** ①귀국비용보험,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(1점) ②우수 기숙사 설치·운영 사업장(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2점) ③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(산업인력공단이 '18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1점) ④ 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18001) 인증 사업장(각1점) ⑤ 노동시간단축 사업장(2점)
- **감점 항목 (5개)** ①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·점검 결과 임금(퇴직금)체불,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(건당 0.2 ~ 0.5점, 최대 3점), 그 외 범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(건당 0.1 ~ 0.3점) ②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(1인당 0.5 ~ 2점, 최대 5점)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 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(성폭행 10점, 폭언·폭행·성희롱 5점, 임금체불·근로조건 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) ④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(각 1점), ⑤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(1점),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(2점)
- **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:** ①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②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③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④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⑤전산추첨

**<소수업종 점수항목 및 동점자 우선선발 기준 >**

- **기본 항목 (4개)** ①외국인고용 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하고 있는 외국인이 적을수록(22.4~30점) ②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 만료자('18.2월~7월 까지 6개월간)가 많을수록(22.4~30점) ③신규 고용 신청 인원이 적을수록(15~20점) ④내국인 구인노력 기간 중 고용센터 알선자(내국인)를 많이 고용할수록(18~20점) 높은 점수 부여
- **가점 항목 (8개)** ①귀국비용보험, 상해보험 전원 가입 및 보험료 완납 사업장(1점) ②SOC 사업장(+2점) ③친환경 농축수산물 인증사업장(0.2점) ④우수 기숙사 설치·운영 사업장(고용센터 지도점검 결과 우수기숙사로 인정된 경우 최대 2년간 5점) ⑤사업주 교육 이수 사업장(산업인력공단이 '18년도에 실시한 사업주 교육을 이수한 경우 2점) ⑥위험성 평가 인정 또는 안전보건경영시스템(KOSHA18001) 인증 사업장(각1점) ⑦농축산·어업 표준근로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수 사업장(농축산·어업, 0.1~0.5점) ⑧농축산업 주거환경 우수 사업장(농축산업, 최저기준 이상의 주거시설로서 △수세식화장실 설치, △숙소 건물내 샤워실 또는 입식세면대 설치, △전기안전진단 받은 경우, 1점~3점), 아파트·단독주택·연립·다세대주택, 이에 준하는 시설(오피스텔 등) 1점 ⑨ 노동시간단축사업장(2점) ※ 우수기숙사로 인정받아 가점(5점)을 받은 경우, 중복하여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
- **감점 항목 (11개)** ①관할 고용센터가 전년도에 실시한 사업장 지도·점검 결과 임금(퇴직금)체불, 최저임금 미지급 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(건당 0.2 ~ 0.5점, 최대 3점), 그 외 범위반 지적사항이 있는 사업장(건당 0.1 ~ 0.3점) ②출국만기보험료 2회 이상 연체한 사업장(1인당 0.5 ~ 2점, 최대 5점) ③사업주 귀책사유로 인한 사업장변경자가 있는 사업장 (성폭행 10점, 폭언·폭행·성희롱 5점, 임금체불·근로조건위반 기타 사업주 귀책사유 3점) ④2년간 산재은폐 또는 보고의무 위반 사업장(각 1점) ⑤사망재해 최근 2년 1명 발생 사업장(1점), 사망재해 최근 2년 2명 이상 발생 사업장(2점) ⑥농축산·어업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라인 미준수 사업장(농축산·어업, 0.2점~1점), 가이드라인 준수 가점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·점검 시 준수 여부 확인, 미준수 시 감점부여 ⑦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 허위신청 사업장(농축산업, 항목당 1.5점), 농축산업 주거환경 가점신청 사업장에 대해 사업장 지도·점검 시 사실 여부 확인하여 허위인 경우 확인시점 이후 1년간 항목 당 1.5점 감점 ⑧숙소 최저기준 미달사업장(1~5점, △침실:성별구분, 인당2.5㎡, △난방시설:보일러를 이용한 바닥난방 △화장실, 샤워실 설치△잠금장치(침실, 화장실, 샤워실)△소화시설(방별 화재감지기, 소화기 설치) ⑨숙소기준 허위제출 사업장( 1.5~7.5점) ⑩숙소기준에 미달하면서 숙소비용을 부담 시킨 사업장( 1~3점) ⑪농업분야 시 발생사업장에 대해 최근 2년간 시발생 횟수에 따른 감점부여(0.5~2점)
- **동점 사업장 중 우선 배정 사업장 선정 기준** ①내국인 구인노력 점수가 높은 사업장 ②외국인 고용허용인원 대비 실제 고용인원이 적은 사업장 ③감점항목에 감점이 없는 사업장 ④외국인 고용인원 대비 재고용만료자가 많은 사업장 ⑤전산추첨

□ 고용허가서 발급 대상 사업장 안내: 4.26(금) 14:00, 16:00

- 점수가 높은 사업장에는 고용허가서를 발급받기 위해 지방관서에 방문해야 하는 일자 및 시간을 안내해 드리고, 대기 사업장에는 대기번호를 안내해 드립니다.

\* 안내 방법: SMS 문자 및 EPS 홈페이지(www.eps.go.kr)

□ 고용허가서 발급: 소수업종 4.29(월)~5.2(목)  
제조업 5.3(금)~5.9(목)

- 고용허가서를 발급받는 사업장에서는 반드시 지정된 일자 및 시간에 지방관서를 방문하여 고용허가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.
- 지정된 시간 이후에만 고용허가서 발급이 가능하므로 미리 오실 필요가 없으며, 지정시간보다 늦게 오시면 순서가 밀릴 수 있고,
  - 당일 방문하지 않으시면 고용허가서 발급이 안 될 수 있으니 반드시 지정된 일자·시간에 방문하시기 바랍니다.

□ 대기순번 처리

- 고용허가서 취소·포기 사업장 등이 있어 잔여인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대기 순번에 따라 미리 문자로 안내하고 고용허가서를 발급합니다.
- 정해진 발급 인원보다 신청사업장이 많을 경우 접수 순번에 따라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 배정인원이 모두 소진되면 대기사업장 중에는 고용허가서 발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.

<붙임6>

외국인근로자 주거시설표

■ 작성방법

외국인근로자에게 **숙소를 제공하는 경우** 숙소 내 시설을 해당 항목별로 기재 또는 로 표시하여 주십시오.

**숙소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** 주거시설표를 작성·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.

■ 유의사항

전기안전진단에 대한 **증빙자료**(진단결과서 등)는 **별도 제출**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가점을 적용하지 않습니다.

상기 제출자료에 대해 현장점검 결과 허위 기재가 있을 경우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 또는 **1년간 감점(항목당 1.5점)**을 적용합니다.

① 사업체	사업장명		업종	
	대표자		소재지	
	사업장 등록 번호 (주민등록번호)			

② 숙소유형	① 일반 주거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주택 <input type="checkbox"/> 고시원 <input type="checkbox"/> 오피스텔
		<input type="checkbox"/> 숙박시설(여관, 호텔, 펜션 등)
② 임시 주거시설	② 임시 주거시설	<input type="checkbox"/> 컨테이너 <input type="checkbox"/> 조립식 패널 <input type="checkbox"/> 사업장 건물(사무실, 창고 등)
		<input type="checkbox"/> 기타 주택형태 시설(컨테이너, 조립식 패널 제외)

◆ 세부 작성방법

■ 일반 주거시설은 건축법에 따라 **합법적인 신고 또는 허가**를 받은 **주거용 시설로 한정** 건축물대장 상에 등기된 건축물의 용도와 동일한 종류에 표시하되,

아파트·기숙사 등 공동주택도 주택에 표시  
(예: 단독주택, 빌라(연립주택), 아파트, 원룸형 주택, 기숙사 → 주택)

■ 임시 주거시설은 해당 종류에 표시하되, 숙소 외부에 비닐·차양막 등 부설 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도 주된 구조물을 기준으로 구분

(예: 컨테이너 시설 외부에 비닐하우스 설치 → 컨테이너 표기)

③ 침실	① 남녀구분	<input type="checkbox"/> 남녀구분 <input type="checkbox"/> 남녀혼숙
	② 근무조	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조 있음 ( <input type="checkbox"/> 조별 구분 <input type="checkbox"/> 혼숙) <input type="checkbox"/> 근무조 없음
	③ 침실면적	<input type="checkbox"/> 1인별 2.5㎡ 이상 <input type="checkbox"/> 1인별 2.5㎡ 미만
	④ 거주인원	<input type="checkbox"/> 1실당 15명 이하 <input type="checkbox"/> 1실당 16명 이상

◆ 세부 작성방법

■ 침실구분: **별도의 건물**을 숙소로 이용하거나 **층 또는 벽으로 별개의 공간으로 나누어진 경우**

■ 근무조: 근무시간이 서로 다른 근로자

